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파주에은방문요양센터 24년 운영 규정 중”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1)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② 계약목적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 함에 있다.

③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④ 월 이용료 : [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2024. 1. 1. 기준)

[표1]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2024년 기준)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2024년 기준)

분 류	수가	본인부담금
30분 이상	16,630	2,495
60분 이상	24,120	3,618
90분 이상	32,510	4,877
120분 이상	41,380	6,207
150분 이상	48,250	7,238
180분 이상	54,320	8,148
210분 이상	60,530	9,080
240분 이상	66,770	10,016

[표3] 방문요양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⑤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 (1)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 (2)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 (4) 장보기 비용: 시장 동행시 실제 물품 구입비용

제12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② 서비스 제공시간 동안 수급자의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③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알 권리
- ④ 상담을 통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⑤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서비스 중지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
-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의무
-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 시 서비스 합의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할 의무
- ⑤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⑥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13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1)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3)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 (4)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 (5) 3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제14조 (이용료 등 비용수납 및 반환)

- (1)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 (2)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